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선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4.

발 의 자 : 박선원 · 김승원 · 유동수
박민규 · 부승찬 · 노종면
이수진 · 전용기 · 조정식
고민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,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한편,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·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방개혁의 목적·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

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·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9조 및 제14조 등).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변화와 과학기술”을 “변화, 과학기술”로, “변화에”를 “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 여건의 변화에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병력수급 예측 및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재설계

제5조제3항 중 “안보정세”를 “안보정세, 국방인력 수급현황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제13조에 따른 민간인력 활용확대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16조에 따른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에 관한 사항
3. 제18조에 따른 장교의 진급의 공정성 및 균형있는 진급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

제13조의 제목 중 “활용확대”를 “활용확대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

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재설계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 및 조정에 관한 미래운영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미래운영방안에는 군구조 개편방안 및 이와 연계된 인력운용구조 조정 방향, 군무원·부사관 등 대체인력의 필요 규모, 충원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래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을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3년 단위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및 반영의 절차와 구체적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

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<u>변화와 과학기술</u> 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<u>변화에</u>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,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변화, 과학기술</u> ----- <u>변</u> <u>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</u> <u>국방인력 수급 여건의 변화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기본이념)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	제2조(기본이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</u> <u>대응하기 위한 병력수급 예측</u> <u>및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재설</u> <u>계</u>

제5조(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)

① · ② (생략)

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되,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,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9조(보고 등) ① (생략)

<신설>

제5조(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안보정세, 국방인
력 수급현황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보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제13조에 따른 민간인력 활용확대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
2. 제16조에 따른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에 관한 사항

3. 제18조에 따른 장교의 진급의 공정성 및 균형있는 진급

② (생 략) 제13조(민간인력의 <u>활용확대</u>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 제14조(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 전방향)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13조(민간인력의 <u>활용확대 등</u>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</u> <u>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14조(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 전방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) ② <u>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과</u> <u>협의하여 매년 인구구조 변화</u> <u>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</u> <u>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용구조의</u> <u>재설계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</u> <u>및 조정에 관한 미래운영방안</u> <u>을 마련하고, 이를 대통령 및</u> <u>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③ 제2항에 따른 미래운영방안 에는 <u>군구조 개편방안 및 이와</u> <u>연계된 인력운용구조 조정 방</u> <u>향, 군무원·부사관 등 대체인</u> <u>력의 필요 규모, 충원목표 및</u> <u>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④ <u>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</u>
--	---

<u><신 설></u>	<u>항에 따른 미래운영방안의 주</u> <u>요 내용을 제5조에 따른 국방</u> <u>개혁기본계획에 3년 단위로 반</u> <u>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</u> <u>른 보고 및 반영의 절차와 구</u> <u>체적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